

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

[2003. 1. 18]
조례 제2629호

일부개정 2005. 3. 16 조례 제2700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)
전문개정 2008. 6. 25 조례 제2873호
일부개정 2011. 5. 6 조례 제2979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일부개정 2013. 1. 10 조례 제3072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일부개정 2015. 2. 22 조례 제3224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일부개정 2018. 4. 6 조례 제3460호
(연천군 포상조례)
일부개정 2019. 2. 28 조례 제3566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3. 7. 13 조례 제3873호
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
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외국인·재외동포 및 다른 시·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〈개정 2019. 2. 28〉

제2조(수여대상) 연천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“명예군민증서”라 한다)의 수여대상은 외국인·재외동포 및 다른 시·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2. 28〉

1.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
2. 문화·예술·체육·과학·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
4. 그 밖에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수여시기)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·군으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. 〈개정 2019. 2. 28〉

제4조(명예군민증서 등)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

수여하되,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.

② 다른 시·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군민패와 별표 3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명예군민증과 별표 4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, 다른 시·군으로의 이주가 필요할 때 별표 2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. <개정 2019. 2. 28>

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
제5조(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) ① 다음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9. 2. 28>

1.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여부
2.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

② 위원회는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. 4. 6>

제6조(수여 및 보고)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곧 연천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19. 2. 28>

제7조(수여자의 권리 등)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23. 7. 13>

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2. 28>

1. 문화행사,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
2. 각 전문분야별 교육의 강사로 초빙
3. 신문·군정홍보지·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
4. 군수명의 연하장 발송
5. 군정 홍보책자 및 군정홍보지 등의 배포
6. 설·추석 명절 연천군 농·특산품 지급

제8조(명예군민증서의 취소) ①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2.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
3.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

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2. 28]

제9조 삭제 <2019. 2. 28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5. 6 조례 제2979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9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⑰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. 10 조례 제3072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9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⑬ 생략

부칙 <2015. 2. 22 조례 제3224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9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안전행정과장”으로

한다.

⑪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〈2018. 4. 6 조례 제3460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연천군인사위원회”를 “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 〈2019. 2. 28 조례 제356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3. 7. 13 조례 제3873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
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

제	호
명 예 군 민 증	
(성명)	
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,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.	
년	월 일
대한민국 연천군수 ○ ○ ○ 인	

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		
(name)		
To applaud your devotion to Yeoncheon Coun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,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.		
month	day	year
(sign)		
Mayor of Yeoncheon County Republic of Korea		

[별표 2]

다른 시·군 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

제	호				
명 예 군 민 패					
(주소)					
(직위 또는 직업, 성명)					
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,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.					
년		월		일	
연천군수		○	○	○	인

[별표 3] <개정 2019. 2. 28>

명예군민증의 모형 및 규격

1. 모형

제	호	명 예 군 민 증	
사진 (3×4cm)		(직위 또는 주소) (성 명) (생년월일)	
귀하를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.			
		년	월 일
		연천군수 인	

2. 규격 : 가로 8.5센티미터, 세로 5.5센티미터

제 호

명예군민증서

(주소 또는 직위)
(성명)

귀하를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함께 하고자
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, 「연천군 명예
군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라 연천군민을
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연천군수 ○ ○ ○ 인